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4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고성미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9월 4일)

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경기침체(고물가, 고금리)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특별 보증 용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 지원과 태풍·홍수·한파 등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의 재난 범위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함(안 제5조의2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준수 사항을 정비함(안 제5조의3)
- 특별 무이자 용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제2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 뿐만아니라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, 소상공인의 특별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5조의2에서는 ‘사회재난’만을 규정한 것을 ‘안전재난’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,
  - 안 제5조의3에서는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게 법령 명칭에 홑낫표(「」)를 사용함.
  -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3고 현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영업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